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1174호)

예비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8. 31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9. 8. 31	
다. 상 정 일 자 : 2009. 9. 9	총무위원회 상 정
라. 의 결 일 자 : 2009. 9. 11	총무위원회 수정의결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규모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09.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311,466,883	294,523,365	16,943,518	5.75
일 반 회 계	292,410,051	276,270,459	16,139,592	5.84
특 별 회 계	19,056,832	18,252,906	803,926	4.40
기 타 특 별 회 계	19,056,832	18,252,906	803,926	4.40
상 수 도 사 업	6,318,923	5,875,317	443,606	7.55
하 수 도 사 업	2,084,165	2,080,474	3,691	0.18
의 료 급 여 사 업	606,945	587,829	19,116	3.25
기 초 생 활 보 장 사 업	1,597,494	1,571,360	26,134	1.66
농 공 단 지 조 성 사 업	1,113,553	1,113,553	0	0.00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1,741,462	1,734,182	7,280	0.42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운 용	404,218	403,796	422	0.10
주 차 장	899,269	714,638	184,631	25.84
수 질 개 선	121,412	121,413	△1	0.00
기 반 시 설	1,108,797	1,108,797	0	0.00
장 기 미 집 행 도 시 계 획 시 설 대 지 보 상	1,766,797	1,766,797	0	0.00
농 어 촌 발 전 기 금 운 용	1,293,797	1,174,750	119,047	10.13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9. 예산안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액	
합 계	292,410,051	100	276,270,459	100	16,139,592	
세	지 방 세	16,047,000	5.49	14,507,000	5.25	1,540,000
	세 외 수입	43,232,808	14.78	35,148,865	12.72	8,083,943
	경상적세외수입	9,098,335	3.11	7,737,065	2.80	1,361,270
	임시적세외수입	34,134,473	11.67	27,411,800	9.92	6,722,673
입	지 방 교 부 세	117,197,048	40.08	122,567,574	44.37	△5,373,526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000,000	2.05	4,000,000	1.45	2,000,000
	보 조 금	109,936,195	37.60	100,047,020	36.21	9,889,175
	국고보조금등	79,134,728	27.06	69,731,507	25.24	9,403,221
	도비 보조금	30,801,467	10.53	30,315,513	10.97	485,954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9. 예산안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액	
합 계	292,410,051	100	276,270,459	100	16,139,592	
세	일반공공행정	13,351,171	4.57	11,026,994	3.99	2,324,177
	공공질서 및 안전	2,248,847	0.77	2,233,919	0.81	14,928
	교 육	2,193,753	0.75	2,213,753	0.80	△20,000
	문화 및 관광	33,253,962	11.37	32,810,028	11.88	443,934
	환 경 보 호	30,869,350	10.56	28,552,798	10.34	2,316,552
	사 회 복 지	47,240,768	16.16	42,489,252	15.38	4,751,516
	보 건	3,849,935	1.32	3,821,141	1.38	28,794
	농림해양수산	60,946,125	20.84	56,859,811	20.58	4,086,314
	산업·중소기업	3,528,248	1.21	3,479,905	1.26	48,343
	수송 및 교통	17,824,175	6.10	17,492,941	6.33	331,234
	국토 및 지역개발	34,914,229	11.94	32,150,391	11.64	2,763,838
	예 비 비	2,930,256	1.00	3,930,256	1.42	△1,000,000
출	기 타	39,259,232	13.43	39,209,270	14.19	49,962

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9. 예산안	구성비 (%)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액	
합 계	19,056,832	100	18,252,906	100	803,926	
세	세 외 수 입	17,441,757	91.52	17,974,439	98.47	△532,682
	경상적세외수입	3,155,799	16.56	3,146,299	17.24	9,500
	임시적세외수입	14,285,958	74.97	14,828,140	81.24	△542,182
입	보 조 금	1,615,075	8.48	278,467	1.53	1,336,608
	국고보조금	1,566,781	8.22	230,173	1.26	1,336,608
	도비보조금	48,294	0.25	48,294	0.26	0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9. 예산안	구성비 (%)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액	
합 계	19,056,832	100	18,252,906	100	803,926	
세	환 경 보 호	8,406,837	44.11	7,959,541	43.61	447,296
	사 회 복 지	2,178,985	11.43	2,133,735	11.69	45,250
	농림해양수산	1,293,797	6.79	1,174,750	6.44	119,047
	산업·중소기업	1,517,771	7.96	1,517,349	8.31	422
	수송 및 교통	899,269	4.72	714,638	3.92	184,631
	국토 및 지역개발	4,594,631	24.11	4,589,112	25.14	5,519
기 타	165,542	0.87	163,781	0.90	1,761	

5. 채무부담 행위조서 : 해당없음

6. 계속비 사업조서 : 해당없음

7. 명시이월 사업조서 : 해당없음

8.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보조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계	국비	군특	기금	분권	도비	군비	계	국비	군특	기금	분권	도비	군비	계	국비	군특	기금	분권	도비	군비
합계	164,818,535	58,354,388	18,139,467	4,207,654	2,276,540	30,849,761	50,990,725	150,808,002	50,729,836	17,691,333	1,550,511	2,478,866	30,363,807	48,003,649	14,010,533	7,624,552	458,134	2,657,143	△202,326	485,954	2,987,076
기획감사실	1,466,506			1,336,608		59,839	70,059	117,688					49,839	67,849	1,348,818			1,336,608		10,000	2,210
주민생활과	41,896,397	23,294,567	7,000	173,063	1,844,019	7,711,686	8,866,062	39,033,262	21,296,426	7,000	28,758	1,986,483	7,468,160	8,246,435	2,863,135	1,998,141		144,305	△142,464	243,526	619,628
행정과	674,074	124,091				169,425	380,558	759,648	131,074				258,506	370,068	△85,574	△6,983				△89,081	10,490
재무과	58,620					32,800	25,820	62,120					32,800	29,320	△3,500						△3,500
종합민원실	793,141	158,916				194,200	440,025	755,941	158,916				157,000	440,025	37,200						37,200
문화관광과	9,630,486	1,683,054	2,100,000	1,117,524	91,404	1,524,811	3,113,693	9,637,824	1,733,119	2,110,000	105,766	134,008	1,690,564	3,874,367	△7,338	△50,065		1,011,758	△42,604	△165,753	△760,674
지역경제과	6,632,196	2,022,329	1,000,000		80,147	737,908	2,791,812	4,777,794	316,130	1,000,000		91,199	861,566	2,508,899	1,854,402	1,706,199			△11,052	△123,658	282,913
환경과	1,295,823	605,157		50,000		38,951	601,715	279,039	96,765		50,000		38,951	93,323	1,016,784	508,392					508,392
녹지공원과	8,973,431	3,758,452	675,280			1,429,157	3,110,542	9,071,029	3,859,825	675,280			1,480,244	3,055,680	△97,598	△101,373				△51,087	54,862
해양수산과	9,505,909	2,585,625	1,469,000		83,090	2,456,630	2,911,564	6,699,234	630,500	1,469,000		83,090	1,906,480	2,610,164	2,806,675	1,955,125				550,150	301,400
건설재난과	25,286,323	2,865,879	6,548,000		21,075	7,059,179	8,792,190	22,778,889	1,618,511	6,548,000		21,075	7,050,947	7,540,356	2,507,434	1,247,368				8,232	1,251,834
도시개발과	7,793,285		1,164,000			2,374,500	4,254,785	7,793,285		1,164,000			2,374,500	4,254,785							
보건소	2,017,064	454,334		517,510	5,279	356,557	683,384	1,995,330	444,853		519,394	5,279	445,018	580,786	21,734	9,481		△1,884		△88,461	102,598
농업정책과	2,074,718	341,336	1,250	6,720	103,211	372,875	1,249,326	1,797,778	102,069	1,250	6,720	103,211	330,044	1,254,484	276,940	239,267				42,831	△5,158
농업지원과	10,971,251	6,763,420	33,000		30,495	1,605,781	2,538,555	10,922,608	6,763,420	33,000		36,060	1,570,611	2,519,517	48,643				△5,565	35,170	19,038
농축산과	4,795,120	666,228	499,000	425,229	10,500	1,021,076	2,173,087	4,585,496	666,228	499,000	258,873	10,500	1,024,577	2,126,318	209,624			166,356		△3,501	46,769
관광지사업소	9,639,886		2,970,000	500,000		1,670,886	4,499,000	9,585,000		2,970,000	500,000		1,616,000	4,499,000	54,886						54,886
상하수도사업소	21,314,305	13,031,000	1,672,937	81,000	7,320	2,033,500	4,488,548	20,156,037	12,912,000	1,214,803	81,000	7,961	2,008,000	3,932,273	1,158,268	119,000	458,134		△641	25,500	556,275

9.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 세 입

(단위 : 천원)

부 서 별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2009.예산안	기정액	증 감	2009.예산안	기정액	증 감	2009.예산안	기정액	증 감
합 계	230,109,614	220,840,612	9,269,002	226,163,713	216,947,241	9,216,472	3,945,901	3,893,371	52,530
기획감사실	125,000,349	128,356,595	△3,356,246	123,258,887	126,622,413	△3,363,526	1,741,462	1,734,182	7,280
주민생활과	33,264,088	30,764,866	2,499,222	31,059,649	28,605,677	2,453,972	2,204,439	2,159,189	45,250
행정과	240,276	336,340	△96,064	240,276	336,340	△96,064			
재무과	45,615,328	40,200,400	5,414,928	45,615,328	40,200,400	5,414,928			
종합민원실	499,356	462,156	37,200	499,356	462,156	37,200			
문화관광과	6,715,689	5,919,749	795,940	6,715,689	5,919,749	795,940			
보건소	2,144,502	2,225,366	△80,864	2,144,502	2,225,366	△80,864			
관광지관리사업소	15,795,126	11,740,240	4,054,886	15,795,126	11,740,240	4,054,886			
고성공룡박물관	834,900	834,900		834,900	834,900				

○ 세 출

(단위 : 천원)

부 서 별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2009.예산안	기정액	증 감	2009.예산안	기정액	증 감	2009.예산안	기정액	증 감
합 계	147,415,180	142,043,969	5,371,211	143,469,279	138,150,598	5,318,681	3,945,901	3,893,371	52,530
기획감사실	7,669,855	8,695,937	△1,026,082	5,928,393	6,961,755	△1,033,362	1,741,462	1,734,182	7,280
주민생활과	46,799,559	43,722,629	3,076,930	44,595,120	41,563,440	3,031,680	2,204,439	2,159,189	45,250
행정과	40,091,702	40,032,329	59,373	40,091,702	40,032,329	59,373			
재무과	5,336,996	3,063,440	2,273,556	5,336,996	3,063,440	2,273,556			
종합민원실	1,371,634	1,334,434	37,200	1,371,634	1,334,434	37,200			
문화관광과	16,633,455	16,357,903	275,552	16,633,455	16,357,903	275,552			
보건소	4,602,751	4,571,107	31,644	4,602,751	4,571,107	31,644			
관광지관리사업소	17,520,767	17,350,385	170,382	17,520,767	17,350,385	170,382			
고성공룡박물관	1,276,691	1,272,691	4,000	1,276,691	1,272,691	4,000			
읍면 예산	6,111,770	5,643,114	468,656	6,111,770	5,643,114	468,656			

10.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8월 31일 고성군수로 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174호로 접수되어 제16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추경예산안의 총괄 및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114억 6,68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9억 4,351만 8천원이 증액되어 5.75%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61억 3,959만 2천원이 증액된 2,924억 1,005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392만 6천원이 증액된 190억 5,683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은 160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80억 8,394만 3천원이 증액된 432억 3,280만 8천원으로 편성되어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0.27%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3억 7,352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20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98억 8,917만 5천원이 증액된 1,099억 3,619만 5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비 133억 5,117만 1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22억 4,884만 7천원, 교육비 21억 9,375만 3천원, 문화 및 관광비 332억 5,396만 2천원, 환경보호비 308억 6,935만원, 사회복지비 472억 4,076만 8천원, 보건비 38억 4,993만 5천원, 농림해양수산비 609억 4,612만 5천원, 산업 중소기업비 35억 2,824만 8천원, 수송 및 교통비 178억 2,417만 5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349억 1,422만 9천원, 예비비 29억 3,025만 6천원, 기타비용 392억 5,923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상수도사업 등 12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5억 3,268만 2천원이 감액된 174억 4,175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13억 3,660만 8천원이 증액된 16억 1,507만 5천원으로 계상되어 2009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90억 5,683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비 84억 683만 7천원, 사회복지비 21억 7,898만 5천원, 농림해양수산비 12억 9,379만 7천원, 산업·중소기업비 15억 1,777만 1천원, 수송 및 교통비 8억 9,926만 9천원, 지역개발비 45억 9,463만 1천원, 기타비용 1억 6,554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301억 96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2억 6,900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92억 1,647만 2천원이 증액된 2,261억 6,371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9억 4,590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3억 7,121만 1천원이 증액된 1,474억 1,518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1,558억 7,927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9억 4,590만 1천원입니다.
- 부서별·읍면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 본 위원회 소관 주요 신규사업은 8개 사업으로 이들 신규사업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이월될 우려는 없는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지, 필요한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형식구비를 위해서 사후에 편성한 것은 없는지.
 - 그리고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13개 사업에 대하여는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과 삭감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성과별 세부검토사항으로

《기획감사실》

P. 88, 89

- 인구증가 우수업체 환경개선 지원금 10,000천원,

-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활동 보상금 2,472천원,
- 반부패 청렴도 조사 6,000천원,
- 고성교육인의 날 행사 20,000천원은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P. 9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 세입부분 기본지원사업 지원금1,329,328천원은
기존 기타잡수입으로 부기하던 것을
⇒ 기금으로 조정하고 세출도 그에 맞게 계상한 것이나 과목을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주민생활과》

P. 95

- 세입중 기타사용료인
 - 납골당 사용료 20,000천원,
 - 화장장 사용료 40,000천원,
 - 소규모묘지 공원사용료 8,000천원을 금회 세입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이들 세입은 매년 일정금액이 반복적으로 세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여 당초예산이나 제1회 추경에는 계상하여야 함에도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데에 따른 설명이 요구 됩니다.

P.96

- 청소년운영위원회 1,000천원, 수련프로그램운영 6,000천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4,000천원,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 19,000천원,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77,905천원,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 6,500천원, 청소년지도자
배치 9,720천원, 청소년자치위원회운영 1,500천원, 시군청소년통합 지원체계
운영 22,000천원은 국고보조금에서 전액 삭감하여 기금과목에 편성한
것으로 설명이 요구됨.

P. 109

- 노인복지시설운영비 지원사업은 도비 219,560천원이 삭감되고 군비는
110,190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설명이 요구됨.

P. 117

- 다문화가정 무상보육료지원 국·도·군비 257,592천원

P. 118

-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비 국·도·군비 25,000천원,

P.120

- 소규모영업점 문턱없애기사업 13,000천원은 전액삭감된 것입니다.
- 중증장애인 목욕탕 기능보강사업비 도비 1억원과,

P. 122

- (민간자본보조) 영보작업장 기능보강사업신축은 총 사업비가 422,000천원으로 금회에 계상된 것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민간자본보조) 동해청소년학교는 도·군비 각각 53,000천원이 증액되어 총 264,020천원으로 부담비율은 5:5로 사업의 성격상 국·도비 지원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P.126

-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의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금회에 19,116천원이 증액되어 397,978천원이 편성된 것으로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행 정 과》

P.132

- 진실규명공동수행사업비 6,983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P.133

- 군정현안 및 주요시책 업무추진비는 기정 8,000천원에서 금회 20,000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이 2009. 9. 15일 승인되는 점을 감안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 20,000천원, 재향군인회 제57주년 향군의 날 기념행사비 5,000천원은 신규사업입니다.

P.134

- TV난시청 해소사업은 기존 340,740천원으로 도·군비 5:5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도비93,570천원만 삭감되고 군비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P.135

-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20,000천원은 신규사업으로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재 무 과》

P.142

- 일반회계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금번에 4,700,000천원으로 기 편성된 금액에서 약 24%인 900,000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시재나 이자율 등을 감안해 볼 때 예측이 가능하여 당초예산이나 제1회 추경에 반영 할 수 있었는데도 금회에 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P.144

- 관용차량 수선비 255,696천원중 27%인 78,573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삭감하여도 차량유지에 문제가 없을 것인지 ?

《문화관광과》

P.159

- 민간경상사업의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국·도·군비 150,000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P.161

-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민간행사보조)는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고성여중 탁구부 운영지원은 45,000천원 삭감되었습니다.

P.162

- 거류체육공원 인조잔디 조성사업 설계비 30,000천원, 고성게이트볼장 개보수 50,000천원(도비)은 신규사업입니다.

- 역도경기장 건립비 국·군비 1,200,000천원중 군비 부담분 전액인 700,000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삭감하여도 전체적인 추진일정에는 차질이 없는지?

P.163

- 소가야유물전시관 유물구입비는 100,000천원이 계상된 것으로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P.165

- 세계자연유산등재 기념축제 지원경비 300,000천원 전액이 삭감된 것입니다.

《보 건 소》

P.170

- 대가보전지소 이전 신축비는 국·도·군비 부담이 50:25:25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도비분중 94,479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도비분 전액을 군비로 부담한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관광지사업소》

P.180

- 경남도 교육종합복지관 진입도로 실시 설계용역비 85,000천원은 신규사업으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P.181

- 2009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사업중 민간 대행사업비에서 100,000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시설비에 계상한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11. 질의 및 답변

《기획감사실》

- 문 : 인구증가 우수업체 환경개선 지원금,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활동 보상금, 고성교육인의 날 행사비는 전액 삭감된 것으로 삭감 사유가 무엇이며, 삭감해도 문제가 없는 사업이었다면 당초에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 답 : 인구증가 우수업체 지원금은 우수업체를 선정하기가 곤란하여 과목을 변경하여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할 계획이며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활동은 당초에는 감사부서에서 하였으나 계약부서에 주민참여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이중적인 성격으로 감사부서에서는 폐지하는 것이며, 교육인의 날 행사는 스승인의 날에 단합대회를 할 계획이었으나 학교마다 행사 일정이 제각각으로 시행이 어려워 삭감한 것임.

- 문 : 연도폐쇄가 2월28일 종료되면 대체적으로 상반기에 편성되는 제1회 추경에는 국·도비 반환금이 계상되어야 할 것이나 2009년도의 경우 제2회 추경에 2,359,754천원이 계상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
- 답 : 국·도비반환 결정이 연도폐쇄 이후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확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정확한 분석으로 제1회 추경에 계상토록 개선하겠음.
- 문 : 14개 읍면중 4개면에만 출장여비가 금회에 증액되었는데 증액을 해야만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
- 답 : 엑스포 홍보를 위하여 직원들이 관외출장 횟수가 많았습니다.
- 문 : TV 난시청 해소사업은 기존 340,740천원중 금회에 도비 93,570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삭감사유가 무엇인지, 군비도 도비만큼 삭감해야 되지 않나.
- 답 : 당초계획은 63km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26km만으로 해소가 됨에 따라 반납했으며 부담비율에 대하여는 경남도에 요구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음.
- 문 : 시책추진비를 기정보다 증액 편성한 것으로 필요한 예산이라면 당초에 계상하지 않고 금회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
- 답 : 금년도 시책추진비가 전년도 보다 적습니다. 시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는 편성된 금액이 필요하며 도에서 정하여진 한도내의 금액입니다.

《행 정 과》

- 문 : 연금부담금이 2,456,093천원이 계상된 것으로 2009년도에는 인건비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지출될 금액만큼만 예산에 계상토록하고 인건비의 초과계상으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은 없어야 할 것임.
- 답 : 연금부담금이 결산에 의한 납부가 아니고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토록 연금공단에서 요구함에 따라 그런 문제가 발생하여 제도를 개선토록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수차전의를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향후 인건비 예산 계상에 있어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음.

《재 무 과》

- 문 : 관용차량수선비 119,306천원중 48,573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것은 당초에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지.

- 답 : 수선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당초에 편성하였으나 수선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였고 또한 금년에 신차구입이 예년보다 많음에 따라 수선비가 다소 적게 집행되는 결과임.
- 문 : 재산매각을 위하여는 그에 따른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나 금회추경까지 15,000천원이 계상된 것으로 이 금액으로 추진이 될 것인지. 어렵다면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 답 : 매각 필지수 등을 고려 20,000천원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금회추경은 절감예산 편성으로 반영이 적게 된 것입니다만 매각업무 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
- 문 : 국비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과 자체사업추진을 위하여는 자체재원이 확충되어야 하는 것으로 재무과에서는 지방세 등 세수확보에 노력해야 될 것이며 어렵게 확보된 국·도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는 없도록 해야 될 것임.
- 답 :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문화관광과》

- 문 : 역도경기장 건립비 700,000천원을 삭감하여도 전체적인 추진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인지.
- 답 : 내년 당초예산에 도비 9억원이 지원될 것이며 그때 도비와 같이 편성하기로 하고 금번에는 삭감하였습니다.
- 문 :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비는 전액 삭감된 것으로 당초 어디에서 공연을 하려고 했는지. 삭감요구를 우리군에서 요구한 것인지.
- 답 : 상족암 공룡박물관 앞 광장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토요일에 공연을 할 계획이었으며 이 시책은 경남도에서는 선정이 되었으나 중앙에서 취소가 되어 삭감된 것임.
- 문 :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를 12월경에 개최한다면 겨울이 되면 신종플루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하는데 개최가 가능할 것인지.
- 답 : 시기가 남아있으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할 것임.
- 문 :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전체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인지. 군비부담이 많을 것 같으면 우리군 재정여건상으로는 무리한 추진이 아닌지.
- 답 : 기금은 30억 정도가 지원되며 도·군비 7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은 합시다만 경남도내에 이러한 체육시설이 5개소가 건립되는 것으로 도비확보에 어려움이 다소 있음.

- 문 : 소가야유물전시관 유물구입비에 대한 설명 바람. 우리지역에서 발굴되어 동아대 박물관 등에 보관되어 있는 유물은 돌려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 답 : 박물관 등록에 있어서 유물 100점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도 하나의 등록조건이므로 그에 맞추기 위함이며, 우리지역에서 출토되었다 하더라도 장기 무상대여 받아 진열해야 됨.
- 문 : 세계자연유산등재가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신청에 있어서 처음부터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 답 : 전라도4곳, 우리 고성하고 5개소를 묶어서 문화재청에서 신청을 하였으나 발자국만 가지고는 세계적인 유산가치가 낮다고 하며 한번 부결되고 나면 다음에 다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자진취하를 한 것임.

《종합민원실》

- 문 : 정밀연속지적도 DB구축 하는데 여비가 3,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비가 필요한지.
- 답 : 도면을 연속으로 접합하다 보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황측량과 현지조사도 해야 함.

《주민생활과》

- 문 : 청년사업단지원이 무엇을 하는 사업인지. 국제대학교에 위탁을 한 것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 답 : 정부에서 민생안정과 실업자구제 등과 관련 추가사업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내지는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며 국제대학과 협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위탁하게 되었음.
- 문 : 주민생활과에서 서민과 관련되는 여러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내용들에 대하여 설명이 없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민생활과 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하여는 의원 월례회 등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
- 답 :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 : 세입중 기타사용료인 납골당 사용료, 화장장 사용료, 소규모묘지 공원사용료는 매년 일정금액이 반복적으로 세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여 당초예산이나 제1회 추경에는 계상하여야 함에도 금회추경에 반영하게 된 이유?
- 답 :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 문 : 다문화가정 무상보육료지원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따로 지원할 대책은 있는지? 기타 다문화 가정에 예산 등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지원조례 등을 제정하든지 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임. 다문화가정에 대한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추후 보고 바람.
- 답 : 다문화가정 대부분은 저소득계층으로 보육료 부분은 중복이 되어 그쪽에서 지원이 되고 있음. 가족상담소에서 여러 가지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듣고, 친정부모 맺기 사업 등을 하고 있으나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여 별도로 금전적인 지원은 없음.
- 문 : 셋째아이 후 취학전 아동 보육료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출생이 증가되었는지.
- 답 :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향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문 : 노인복지시설운영비지원이 도비는 일부 삭감되고 군비는 증액되었는데 이유는 ? 그리고 주민복지과 대부분의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추경에서 감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답 : 노인복지시설운영비는 도비의 삭감으로 부족되는 금액 만큼 군비를 충당한 것이며 복지예산은 연례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가내시에 의하여 편성하고 확정에 따라 증감을 시키고 있음.
- 문 : 농어촌 보안등 가로등 설치하는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20,000천원만 계상되면 설치가 완료되는 것인지.
- 답 : 설치신청 전수에 비하여는 부족한 금액이지만 우선순위에 의하여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음.

《보 건 소》

- 문 : 대가보건지소 이전신축비는 국·도·군비 사업으로 도비분 중 94,479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도비분 전액을 군비로 부담케 한 것은 도의 횡포가 아닌가. 군비 부담을 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 답 : 도비가 삭감되어 부득이 군비를 부담한 것이며 공사마무리를 위하여는 편성된 대로 승인이 되어야함.
- 문 : 군민체육대회는 연기되었으나 건강체조는 호응이 좋으므로 계속하고 연말쯤 경연대회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 답 : 현재는 경연대회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검토를 해보겠음

《고성공룡박물관》

- 문 : 공룡박물관은 자연사 박물관으로 국내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정비가 되어있음. 그러나 박물관 부지내에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은 시설물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박물관 활성화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답 : 박물관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

- 문 : 경남도 교육종합복지관 진입도로 실시 설계비 8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사비도 준비로 시행하는 것인지.
- 답 : 관광지 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며 문화관광부에서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 입니다.
- 문 : 전국 거북선 창작경연대회 시기는 언제쯤 할 것인지. 개최여부 결정권이 어디에 있는지. 신종플루 문제로 다른 시군에서는 지역 행사 일부를 취소 연기를 하는 곳도 있다고 하나 전국 거북선 창작경연대회를 당항포활성화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개최하는 방향으로 검토바람
- 답 : 국제요트대전과 연계되고 학생참여, 경남도와 협의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대회개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 토 론 : 없음

13. 심사결과

가.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회 계 별	군수제출안	심 사 사 항		수 정 안	비 고
		삭 감 액	증 액		
계	230,109,614	0	0	230,109,614	
일반회계	226,163,713	0	0	226,163,713	
특별회계	3,945,901	0	0	3,945,901	

나.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회 계 별	군수제출안	심 사 사 항		수 정 안	비 고
		삭 감 액	증 액		
계	147,415,180	41,200	41,200	147,415,180	
일반회계	143,469,279	41,200	41,200	143,469,279	
특별회계	3,945,901	0	0	3,945,901	

다. 예산삭감 및 수정현황

- 세입부분 : 없음
- 세출부분 : 덧붙임과 같음

덧붙임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증감액 조서 1부. 끝.

2009年度 第2回 追加更正歳入歳出豫算案 削減額調書

總 務 委 員 會

2009年度 第2回 追加更正歳入歳出豫算案 削減額調書

一般會計
歳出部門

(단위 : 천원)

과 목					군수제출 예산안	수 정 안		수 예 산 정 액	삭 감 내 역
부서	정책	단위	세부 사업	편 성 목		감 액	증 액		
주 민 생활과	아동복지 사업	아동복지 시설운영	아동복지 시설운영	307- 02 민간경상 보조	1,311,929	21,200		1,290,729	- 동해청소년 학교 군비부담 53,000천원중 21,200천원 삭감
행정과	지방행정 역량강화	행정운영 지원	행정시책 추진	203- 03 시책업무 추진비	60,000	10,000		50,000	- 군정현안 및 주요시책 추진 20,000천원중 10,000천원 삭감
“	행정지원	군정홍보 시책	홍보물 제작 및 기록보존	201-01 사무관리비	216,000	10,000		200,000	- 신문, 방송 홍보광고 20,000천원중 10,000천원 삭감
총 3건						41,200			

2009年度 第2回 追加更正歳入歳出豫算案 増額調書

總 務 委 員 會

2009年度 第2回 追加更正歳入歳出豫算案 増額調書

一般會計
歳出部門

(단 위 : 천 원)

과 목					군수제출 예산안	수 정 안		수 정 예산액	삭 감 내 역
부서	정책	단위	세부 사업	편 성 목		감 액	증 액		
기획 감사실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801-01 예비비			41,200		삭감예산 41,200천원
총 1 건						0	41,200		